

# 베네수엘라의 에너지 법제 개관

오 일 석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전임연구원)

## I. 서론

## II. 베네수엘라 원유 · 가스 관련 법제

1. 발전과정
2. 원유 · 가스 자원에 대한 소유권
3. 공공정책 규정
4. 탐사개발 관련 정부의 권한
5. 에너지광물자원부
6. 정부의 로열티 및 세금 정책
7. 국영석유회사 PDVSA
8. 국제 조약 및 협약

## III. 베네수엘라 전력 법제

1. 전력산업의 현황과 발전
2. 전력서비스구조법

## IV. 시사점 및 결론

“글로컬(Glocal)”은 글로벌(global)과 로컬(local)의 합성어로서, 교통, 통신수단 등의 발달로 생활권이 글로벌화되어 경제문제를 비롯한 환경문제, 평화문제 등에서는 국가 간 상호의존이 높아지면서도 국가를 대신하는 단위로서의 지역의 역할이 여전히 강조됨을 의미합니다. 이에 최신외국법제정보는 글로벌과 로컬의 주요 현안들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찾고자 합니다.

## I. 서 론

베네수엘라는 세계 주요 석유수출국 가운데 하나이며, 원유·가스의 수출은 베네수엘라 경제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sup>1)</sup> 베네수엘라는 2011년 현재 원유 매장량에서는 세계 1위<sup>2)</sup>, 생산량에서는 11위를 차지하고 있다.<sup>3)</sup> 베네수엘라는 2010년 기준으로 일일 1.7백만 배럴의 원유를 수출하여, 세계 8위의 수출국이 되었으며, 약 5,500마일에 이르는 원유 파이프라인을 운영하여 국내 원유 소비에 기여하고 있다.<sup>4)</sup> 또한 베네수엘라에는 2012년 기준으로 195조 큐빅 피트(trillion cubic feet, Tcf)의 천연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베네수엘라는 2011년 기준으로 1.1조 큐빅 피트의 천연가스를 생산하였다.<sup>5)</sup>

베네수엘라는 1998년 차베스가 집권한 이후 자원민족주의의 영향으로 원유·가스 등 에너지 분야에 대한 국유화를 더욱 강화하였다. 특히, 차베스는 1998년 선거기간 동안 외국 원유투자설비에 대한 국유화 및 베네수엘라의 해외 부채에 대한 지급 정지 등을 제안하였다.<sup>6)</sup> 차베스는 원유·가스를 국제 정치에 활용하여, 미국에 대한 원유 수출을 감소시켰고,<sup>7)</sup> 러시아,<sup>8)</sup> 중국,<sup>9)</sup> 볼리비아<sup>10)</sup>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차베스 정권하에서 베네수엘라의 석유 생산은 대체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정유 능력도 뚜렷한 증가를 보이지 못하였으므로, 석유 관련 시설 확충은 물론 석유 개

- 
- 1)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U.S. Department of Energy, Country Analysis Briefs, Venezuela(2012., available at <http://www.eia.gov/countries/analysisbriefs/Venezuela/venezuela.pdf>, last visited May 18, 2014).
  - 2) 이투뉴스(2013. 3. 8), 차베스 사후 베네수엘라 석유산업(<http://www.e2news.com/news/articlePrint.html?idxno=68921>, 최종방문 2014. 5. 18) 참조. 특히 오리노코(Orinoco) 강을 따라 375마일 지대에 저장된 석유량을 추산할 경우 베네수엘라는 사우디아라비아 보다 더 많은 석유를 보유한 국가로 등극했다.
  - 3) 임태균, “베네수엘라 4기 차베스 정부의 석유산업 정책 전망 및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경제포커스 (2012. 12), 2면 참조.
  - 4)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supra* note 1.
  - 5) *Id.*
  - 6) Douglas Schoen and Michael Rowan, *The Threat Closer to Home: Hugo Chavez and the War Against America*, Free Press(2009), p.17.
  - 7) James Suggett, Venezuelan Trade Declines with U.S., Increases with Brazil, Russia, China, Japan, VENEZUELANALYSIS.COM(Aug. 21, 2009, available at <http://www.venezuelanalysis.com/news/4738>, last visited May 18, 2014).
  - 8) Putin Signs Energy Deals with Chavez on Venezuela Visit, BBC News, Apr. 3, 2010, <http://news.bbc.co.uk/2/hi/8601388.stm>, last visited May 18, 2014.
  - 9) Warren Bull, Venezuela Signs Chinese Oil Deal, BBC NEWS, Sept. 25, 2008, available at <http://news.bbc.co.uk/2/hi/americas/7634871.stm>, last visited May 18, 2014.
  - 10) Helen Popper, Chavez Spreads His Oil Wealth in Bolivia, REUTERS, May 27, 2006, available at <http://www.commoditydreams.org/headlines06/0527-04.htm>, last visited May 18, 2014.

발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력을 비롯한 전반적인 인프라 확충에 노력하고 있다.<sup>11)</sup> 더구나, 베네수엘라 정부가 오리노코 오일벨트(Orinoco Oil Belt)를 중심으로 초중질유 개발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므로 우리 기업들이 석유산업, 관련 설비 및 인프라 구축 산업 등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기회가 마련되고 있다.<sup>12)</sup> 이와 같이 우리 기업들이 베네수엘라의 원유·가스 등 에너지 분야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베네수엘라의 에너지 법제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고는 베네수엘라의 에너지 법제에 대하여 원유·가스 분야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II. 베네수엘라 원유·가스 관련 법제

### 1. 발전과정

베네수엘라는 말라카이보만(Gulf of Maracaibo)에서 원유가 발견된 1917년경부터 석유를 개발하기 시작하였다.<sup>13)</sup> 베네수엘라는 192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 주요 석유 수출국 가운데 하나였으며,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창립 멤버이자 주요 국가로 활약하였다.<sup>14)</sup> 그렇지만 베네수엘라 원유시장은 1970년대까지 미국계 국제석유회사인 Standard Oil과 Royal Dutch Shell에 의해 독점적으로 지배되었다. 즉, 국제석유회사들은 베네수엘라 원유·가스에 대한 탐사개발, 생산 및 정유 사업을 수행하였고, 베네수엘라 정부는 이에 대해 세금이나 로열티를 받는 수준이었다.

그런데 1970년대 초반, 원유가격이 배럴당 4달러에서 12달러로 급등하자, 베네수엘라 정부는 원유·가스 산업을 국유화하기로 결정하였다.<sup>15)</sup> 베네수엘라 의회는 1971년 석유산업에 대한 국유화로 가는 시발점으로서 석유회사에 대하여 양허<sup>16)</sup> 기간 만료 시에 광구(oil fields)

11) 임태균, 앞의 보고서, p.2 참조.

12) Id.

13) Edwin Lieuwen, "The Politics of Energy in Venezuela", in; Join D. Wirth, ed., Latin American Oil Companies and the Politics of Energy,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1985, p.192.

14) Id, p.207.

15) Carlos A. Molina, Country Report: Venezuela and Petróleos de Venezuela(PDVSA), p.1(available at <http://www.mccombs.utexas.edu/~media/Files/MSB/Centers/EMIC/Conferences/C2ES/Country-Report-Venezuela-PDVSA.pdf>, 최종방문 2014. 5. 17)

16) 오일석, "원유·가스 탐사개발권 계약에서의 계약설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12.

및 관련 시설을 정부에 반납하는 보증증서(bonds)를 요구하였다. 이후 1971년 하반기에는 천연가스에 대하여 국유화하였다.<sup>17)</sup> 또한 베네수엘라 의회는 1973년에 원유 제품의 국내 시장에 대한 권한을 정부에 수여하였다.

1976년에는 석유국유화법(Hydrocarbons Nationalization Law)이 통과되어 석유 산업은 완전히 국유화되었으며,<sup>18)</sup> 정부는 협상 과정에 있던 양허권을 모두 환수하였다.<sup>19)</sup> 위 석유국유화법에 의하여 국가는 의회가 민간 부문과의 합작을 승인하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유·가스 관련 탐사, 개발, 제조, 정유, 저장, 수송 및 국내외 판매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sup>20)</sup> 이와 같이 원유·가스에 대한 국유화 이후, 1975년에 창립된 국영석유회사인 Petróleos de Venezuela(PDVSA)가 베네수엘라 원유·가스 자원의 개발과 감독을 책임지게 되었고,<sup>21)</sup> PDVSA는 1992년까지 원유·가스와 관련된 모든 권한을 수행하였다.

1990년대 원유가격이 하락하자 베네수엘라는 원유·가스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원유개방(Oil Opening, Apertura Petrolera) 정책을 추진하였다.<sup>22)</sup> 이에 따라

---

60-66면 참조. 양허(讓許, Concession)는 원유·가스 탐사개발권에 대한 계약 중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먼저 발전한 것이다. 고전적인 양허의 개념은 한 국가가 국제석유회사에 대하여 계약으로 정한 일정 기간 동안 배타적으로 특정 지역에 있는 유전을 개발할 수 있도록 허가한 계약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고전적 양허에 의하면, 탐사개발자가 부존되어 있는 원유·가스에 대한 소유권을 명시적으로 보유할 수 있다. 탐사개발자는 생산된 원유에 대해서도 자원보유국의 지배자 또는 정부기관에게 로열티만 지급하면 자유롭게 소유할 수 있다. 고전적인 양허계약 하에서 국제석유회사는 양허 받은 지역의 아무 곳에 대하여 시추하거나 시추하지 않을 자유가 있었다. 아울러 탐사된 원유의 생산 여부 역시 국제석유회사의 자유에 달려 있었으며, 탐사개발을 진행하지 않은 지역에 대하여 이를 반납할 의무도 없었다. 자원보유국 정부는 시추 및 개발의 결정 등을 포함하여 원유·가스 탐사개발과 관련한 경영적 판단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또한 없었다.

이러한 고전적 양허계약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동등이익분배, 새로운 로열티 지급, 새로운 보너스의 지급, 세금 부과, 가격통제, 광구반납, 작업의무, 정부의 참여 등의 개선사항을 양허계약에 반영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개선된 양허계약을 현대 양허계약이라 한다. 아울러 현대의 양허는 허가(permit), 라이센스(licence), 리스(lease) 또는 컨소시엄권(consortium right)을 포함하는 개념으로도 사용된다. 그러나 현재의 양허에서도 자원보유국 정부가 국제석유회사로 하여금 일정한 지역에 대한 원유·가스 탐사개발을 허용한다는 기본적인 개념에는 변화가 없다. 따라서 현대의 양허계약에 의하더라도 국제석유회사 혹은 이들이 주축이 된 컨소시엄은 자원보유국의 유전을 개발할 권한을 부여받으며, 그 개발에 대한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재량권이 허용된다. 고전적 양허가 자원보유국 정부의 일방적 공권행위라고 한다면, 현대의 양허는 공법적 계약이라고 이해될 수 있다.

17) Id, p.211.

18) Ley Orgánica que Reserva al Estado la Industria y el Comercio de los Hidrocarburos, G.O., 29 de agosto de 1975 [Venezuela's Hydrocarbons Nationalization Law].

19) Victor M. Tafur, "Sustainable Energy Law in Latin America", Pace University School of Law(S.J.D. dissertation, 2006), p.305.

20) Hydrocarbons Nationalization Law, arts. 1, 5.

21) Victor M. Tafur, supra note 19.

22) Larry B. Pascal, "Developments in the Venezuelan Hydrocarbon Sector", 15 Law and Business Review of the America(2009), p.533.

PDVAS는 외국인 투자를 통한 원유생산량 증대를 위하여 1992년과 1993년에 생산 광구에 대하여 국제석유회사와 14건의 운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996년에는 탐사지역에 대한 개발권에 관한 합자계약을 8건 체결하였고, 1993년과 1997년에는 초중질유 개발과 관련된 4건의 운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997년에는 운영계약을 위한 3차 입찰을 진행하였다.<sup>23)</sup> 이 원유개방 정책에 의하여 PDVAS는 국제석유회사와 운영계약(Operating Agreements) 32건, 위험분배이익개발계약(Shared-Risk and Profit Exploration Agreement) 8건, 4건의 합자계약 등을 체결하였다.<sup>24)</sup> 이와 관련하여 베네수엘라 정부는 법인세 감경, 로열티 기간의 축소, 국제 중재 이용 등의 혜택을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일련의 정책은 입법부와 사법부에 의하여 지지되었다.<sup>25)</sup>

그러나 이러한 원유개방 정책은 차베스가 1998년 12월 집권한 이후 전반적으로 퇴조하였다. 즉, 원유·가스 탐사개발을 위한 새로운 운영계약 체결은 중지되었으며, 원유개방 정책으로 국제석유회사에 매각된 권리에 대한 재국유화가 추진되었다.<sup>26)</sup>

이와 같이 1970년대 이후 지속된 국유화 조치는 모든 원유·가스 자원에 대한 국가 소유와 통제를 보장한 1999년 헌법에 의하여 마무리 되었다.<sup>27)</sup> 아울러 이 헌법은 국영석유회사인 PDVSA에 대한 민영화를 금지하였다.<sup>28)</sup>

한편 1999년에 천연가스법(Natural Gas Law)<sup>29)</sup>은 천연가스의 탐사, 생산, 수송 및 유통 등과 관련된 일부를 민간에 개방하였는데 외국인 투자도 포함시켰다.<sup>30)</sup> 특히, 천연가스법은 부수ガ스(associated gas)<sup>31)</sup> 이외의 가스에 대한 탐사개발 활동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수ガ스 또는 비-부수ガ스를 포함하여, 가스에 대한 수집·저장 및 이용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다.<sup>32)</sup> 나

23) Elisabeth Eliuri and Victorino J. Tejera Pérez, "21st-Century Transformation of the Venezuelan Oil Industry", 26 Journal of Energy and Natural Resources Law(2008), p.477.

24) Id.

25) Alberto F. Ravell, "A brief overview of Venezuela's Oil Policies", LEXOLOGY(2011. 12), <http://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01cf61f2-9591-4ac3-9ceb-59ac37090e13>, 최종방문 2014. 5. 16.

26) Carlos A. Molina, *supra* note 15.

27) Constitution art. 12.

28) Constitution arts. 302-303.

29) Decreto No. 310 de 1999 con Rango y Fuerza de Ley," G.O., 23 de septiembre de 1999, art. 2 (Venez.) [Venezuela's Natural Gas Law].

30) Decreto No. 310 de 1999 con Rango y Fuerza de Ley, G.O., 23 de septiembre de 1999, art. 2 (Venez.) [Natural Gas Law]; Decreto No. 840 de 2000, G.O., 5 de junio de 2000 (Venez.) [Venezuela's Natural Gas Regulations].

31) 원유 개발생산 시 발생하여, 부수적으로 생산되거나 연소되는 가스를 말한다.

32) Natural Gas Law, art. 2.

아가 이 법은 가스에 대한 처리, 수송, 유통 및 수출입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다.<sup>33)</sup>

현재 베네수엘라의 원유·가스 탐사개발, 정유, 수송 및 저장 등의 활동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2001년 석유법이 규율하고 있다.<sup>34)</sup> 2001년 석유법은 이 법이 원유·가스와 관련된 모든 활동에 적용되는 모든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sup>35)</sup> 이 법은 원유·가스 탐사개발을 위한 상류 및 하류 활동은 물론 원유·가스 서비스와 관련된 활동에 대해서도 적용된다.<sup>36)</sup> 이후 위 2001년 석유법을 개정한 2006년 석유법<sup>37)</sup>은 원유·가스 탐사개발을 위한 상류 및 하류 활동에 적용된다고 명시하였지만<sup>38)</sup>, 원유와 부수ガ스에 적용될 뿐 일반적인 가스 개발은 위 천연가스법이 적용된다.<sup>39)</sup>

## 2. 원유·가스 자원에 대한 소유권

베네수엘라 헌법 제12조, 2001년 석유법 및 2006년 석유법 제3조에 의하여 원유·가스에 대한 소유권은 기본적으로 국가에게 있다.<sup>40)</sup> 즉, 베네수엘라 영토내의 모든 원유·가스 자원은 베네수엘라 공화국에 귀속되며, 사인에 의한 소유는 인정되지 않는다.<sup>41)</sup> 아울러 영해, 대륙붕,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 있는 모든 유전(reservoirs) 또한 국가소유로 보고 있다.<sup>42)</sup> 아울러 베네수엘라의 모든 유전에 대한 국유는 절대적인 것으로 취득시효나, 저당권 및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다.<sup>43)</sup>

33) Id.

34) Decreto con fuerza de ley No. 1510 de 2001, G.O., 13 de noviembre de 2001 (Venez.) [Venezuela's 2001 Hydrocarbons Law]. Larry B. Pascal, supra note 22, p.533 참조. 1999년 2월 차베스가 대통령으로 취임하자 베네수엘라 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주요 경제분야에 대한 법률을 제정할 권한을 부여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대통령령 형식으로 된 1999년 전력법, 2001년 석유법 등이 통과되어 시행되었다.

35) Hydrocarbon Law 2001, art. 1.

36) Id.

37) Ley de Reforma Parcial del Decreto No. 1,510 con Fuerza de Ley Orgánica de Hidrocarburos 38,443, G.O., 24 de mayo de 2006 (Venez.)[Venezuela's 2006 Hydrocarbons Law].

38) Hydrocarbon Law 2006, art. 2.

39) Id.

40) 천연가스법(Organic Gaseous Hydrocarbons Law) 제1조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41) Hydrocarbon Law 2001, art. 3; Hydrocarbon Law, 2006, art. 3.

42) Id. 그러나 대륙붕에 있으면서 배타적 경제수역 밖에 위치하고 있는 유전에 대한 베네수엘라의 소유권 주장은 유엔 해양법 협약에 배치된다. 국가 영역(national boundaries)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아마도 유엔 해양법 협약 규정과의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43) Hydrocarbon Law 2001, art. 3.

원유·가스 자원에 대한 국가 소유에 근거하여, 정부는 원유·가스 탐사개발자에 대하여 로열티를 받을 수 있으며,<sup>44)</sup> 생산 보너스를 요구할 수 있고,<sup>45)</sup> 탐사개발 지역에 대한 결정 및 허가권을 부여할 수 있다.<sup>46)</sup>

### 3. 공공정책 규정

베네수엘라의 원유·가스 산업의 목적은 국가 안보와 자원의 합리적 사용 및 환경보호를 염두에 두면서, 국가 발전과 공동선에 기여하는 것이다.<sup>47)</sup> 따라서, 원유·가스와 관련된 모든 활동은 베네수엘라의 ‘공공정책(Public Policy)의 일부’로 간주된다.<sup>48)</sup> 이는 원유·가스와 관련된 모든 활동에 대하여 공용수용이나 국유화가 실행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sup>49)</sup> 즉, 원유·가스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권 설정, 공용수용 및 제품에 대한 한시적 국유가 요구될 수도 있다. 아울러 강제적 준거법 및 관할권 관련 조항이 원유·가스 관련 계약에 편입될 수도 있다.<sup>50)</sup> 따라서 베네수엘라 정부와의 원유·가스 탐사개발계약에서 베네수엘라법 이외의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조항을 삽입하였다 하더라도, 그 조항의 효력이 보장된다고 할 수 없다.<sup>51)</sup> 또한 원유·가스 운영에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용수용이 가능하다.<sup>52)</sup> 원유·가스에서 파생된 제품들의 가격은 베네수엘라 에너지광물자원부(Ministry of Energy and Mines, Ministerio del Poder Popular de Petróleo y Minería) 부령에 의하여 결정된다.<sup>53)</sup> 그렇지만 공용수용 등이 된 경우, 베네수엘라 정부가 수여한 양허계약과 원유계약의 기본 조건으로서 적절한 보상이 보장된다.<sup>54)</sup>

44) Hydrocarbon Law 2006, art. 44. 국가는 30%의 로열티를 받을 수 있지만, 유전이 오리노코 벨트(Orinoco Belt)에 위치한 경우 그 예외로 하고 있다.

45) Hydrocarbon Law 2006, art. 48.

46) Hydrocarbon Law 2006, art. 23.

47) Hydrocarbon Law 2001, art. 5.

48) Hydrocarbon Law 2001, art. 4.

49) Hydrocarbon Law 2001, arts. 34-37.

50) Constitution art. 151.

51) Emily A. Witten, “Arbitration of Venezuelan Oil Contracts: A Losing Strategy?”, 4 Texas Journal of Oil, Gas and Energy Law(2009), p.62.

52) Hydrocarbon Law 2001, arts. 38-39.

53) Hydrocarbon Law 2001, art. 8.

54) Hydrocarbon Law 2001, art. 41.

## 4. 탐사개발 관련 정부의 권한

석유법은 원유·가스 탐사개발과 관련한 각종 활동을 ‘1차적 활동’과 ‘2차적 활동’으로 구분하고 있다. 1차적 활동은 원유·가스의 탐사, 개발, 채굴, 수송 및 저장을 포함한 원유·가스 탐사개발 관련 상류(upstream)<sup>55)</sup> 운영에 필수적인 것이다.<sup>56)</sup> 베네수엘라 정부는 원유·가스 탐사개발과 관련된 모든 1차적 활동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sup>57)</sup> 정부가 직접 또는 국영 기업(PDVSA)<sup>58)</sup> 혹은 정부 자신이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지배자로서 참여한 합자 회사를 통하여 이러한 1차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sup>59)</sup> 그렇지만 정부는 원유·가스 탐사개발과 관련한 1차적 활동 권한을 민간 운영자(private operators)<sup>60)</sup>에게 수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정부는 운영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위 권한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하게 된다.<sup>61)62)</sup> 2001년 이후에 차베스 정부는 국제석유회사가 원유·가스 탐사개발과 관련한 상류 운영자가 되는 것을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sup>63)</sup>

- 55) 원유·가스 탐사개발과 관련한 활동에 대하여 1) 원유·가스 자원에 대한 탐사, 탐사된 유정에 대한 시험 시추, 경제성 평가, 생산 등의 활동과 관련된 상류(upstream), 2) 생산된 원유·가스에 대한 수송이나 운송(가스의 경우 액화 등의 처리 포함)등의 활동과 관련된 중류(midstream), 3) 정유 및 마케팅 등의 활동과 관련된 하류(downstream)로 분류하고 통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56) Hydrocarbon Law 2001, art. 41.
- 57) Hydrocarbon Law 2001, art. 9.
- 58) Hydrocarbon Law 2001, art. 22.
- 59) Natalija Vojvodic and Sergio Casinelli, Oil and Gas Regulation in Venezuela: Overview, (available at <http://uk.practicallaw.com/1-529-6958?source=relatedcontent>, last visited May 13, 2014).
- 60) 오일석, 앞의 박사학위 논문(2012. 12), pp.153-155 참조. 원유·가스 탐사개발은 대규모 자본, 집적된 기술, 고부가가치의 정보 등이 요구되기 때문에 하나의 회사에 의해 단독으로 수행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국제석유회사들은 보통 원유·가스 탐사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합작투자 또는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합작투자 또는 컨소시엄에 참여한 각 당사자들이 원유·가스 탐사개발의 수행을 위한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이 공동운영계약이다. 운영자는 보통 단독으로 지정되며, 공동운영계약에 의하여 특정된다. 일반적으로 원유·가스 탐사개발권 획득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국제석유회사가 운영자로 지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아울러 자원보유국 정부는 원유·가스 탐사개발권 계약에서 운영자의 지정이나 임명에 대하여 해당 정부 부처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 61) Hydrocarbon Law 2001, art. 24.
- 62) 오일석, 앞의 박사학위 논문, pp.83-85 참조. 이는 보통 최소작업의무와 광구반납규정에 의해 규율된다. 현대의 탐사개발권 계약에 있어서 탐사개발권자는 자원보유국 정부에 대하여 최소작업의무를 부담한다. 최소작업의무의 정도는 탐사개발권자가 탐사개발권의 획득을 위하여 제출한 입찰서에 제시되어 있다. 자원보유국 정부는 국제석유회사가 최소작업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탐사개발권을 회수 또는 철회할 수 있다. 또한 탐사개발권자가 일정기간까지 일정한 비율의 광구 범위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의 작업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점진적으로 탐사개발권을 포기하도록 하는 광구반납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 63) B. Seth McNew, “Full Sovereignty Over Oil: A Discussion of Venezuelan Oil Policy and Possible Consequences of

석유법은 정부에게, 시행령을 통하여 민간 운영자에 대해 상류 활동 수행을 허가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sup>64)</sup> 이와 같이 원유·가스 탐사개발 계약의 허가와 취소가 전적으로 정부에 의존되어 있으므로, 베네수엘라에서의 원유·가스 탐사개발 계약은 정치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예측가능성이 곤란하다. 이 법에 의하여 정부는 민간 회사와의 계약에 대해 로열티를 증가시키거나, 기술 이전의무를 강화하는 등 계약의 안정성을 해치는 계약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할 수도 있다.<sup>65)</sup>

2차적 활동은 정유 및 원유·가스제품 판매와 관련되는 하류 활동이다. 이러한 활동은 베네수엘라 에너지광물자원부로부터 면허를 취득한 민간 기업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다.<sup>66)</sup> 그렇지만 베네수엘라의 모든 정유시설은 국가로 귀속된다.<sup>67)</sup>

## 5. 에너지광물자원부

베네수엘라 에너지광물자원부(Ministry of Energy and Mines)는 원유·가스와 관련된 모든 규칙을 제정하고, 시장을 분석하며, 적합한 가격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sup>68)</sup> 아울러 에너지광물자원부는 원유·가스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소관부처로서, 원유·가스 관련 운영, 세금 지급 및 회계 기록 등에 대한 감독 권한은 물론, 탐사개발 광구의 크기와 형태를 결정하는 권한도 있다.<sup>69)</sup> 나아가 에너지광물자원부는 국영회사를 감독하고, 생산 비율을 통제하며, 광구통합(unitization)<sup>70)</sup>에 대하여 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sup>71)</sup> 에너지광물자원부

Recent Changes”, 14 Law and Business Review of America(2008), pp.152-156.

64) Hydrocarbon Law 2001, art. 24.

65) Luis E. Cuervo, “The Uncertain Fate of Venezuela’s black Pearl; The Petrostate and its Ambiguous Oil and Gas Legislation”, 32 Housto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2010), p.662.

66) Hydrocarbon Law 2001, art. 12.

67) Hydrocarbon Law 2001, art. 10.

68) Hydrocarbon Law 2001, art. 8.

69) Id.

70) 원유·가스가 존재하는 지질구조는 서로 광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며, 원유·가스는 동일한 지질구조 내에서 흘러 다니기 때문에, 유전 지대가 두 개 이상의 광구에 걸쳐 있는 경우, 한 쪽 광구의 소유자가 그 지하에 존재하는 원유·가스를 개발하여 생산하는 경우, 인접 광구 소유자의 지하에 있는 원유·가스까지도 생산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인접 광구의 소유자들은 먼저 개발·생산하여 원유·가스를 차지하고자 할 것이고, 이는 분쟁으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 따라서 인접광구의 소유자들은 광구통합계약(Unitization Agreement)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보통이다.

71) Hydrocarbon Law 2001, arts. 30, 37, 42.

는 필요한 면허를 허가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원유·가스 탐사개발 관련 권리의 이전에 대한 승인권도 가지고 있다.<sup>72)</sup> 아울러 기업에 대하여 원유·가스 산업 관련 영업 수행을 승인할 수 있으며, 과징금을 부과함은 물론 영업정지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sup>73)</sup>

## 6. 정부의 로열티 및 세금 정책

베네수엘라 정부는 원유·가스의 소유자로서 원유·가스 탐사개발 등과 관련한 각종 활동을 민간 운영자 등에 대하여 허가하고 일정한 대가를 취득한다. 이러한 대가에는 로열티와 각종 세금이 있다.<sup>74)</sup> 석유법은 로열티를 일률적으로 30%까지 증가시켰음은 물론, 정부로 하여금 로열티를 현금이나 기타 유사한 수단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sup>75)</sup> 원유·가스 탐사개발, 정유 및 운송 등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50%의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sup>76)</sup> 그러나 원유 정유 혹은 중질 원유의 개선만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 또는 비-부수 가스와 관련된 회사들은 일반 회사들이 부담하는 최고 34%의 소득세를 부담하면 된다.<sup>77)</sup> 한편 국내 산업용으로 생산, 소비되는 원유·가스에는 큐빅 미터 당 10%의 세금이 부과된다.<sup>78)</sup> 아울러 베네수엘라에서 판매되는 원유·가스에는 최종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의 30-50%의 세금이 부과된다.

## 7. 국영석유회사 PDVSA

PDVSA는 원유·가스 탐사개발 계약을 통하여 51%의 지분을 확보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자와 원유·가스 탐사개발을 위한 합작회사(Joint Venture)를 설립할 수 있다.<sup>79)</sup> PDVSA는 베네수엘라에서의 원유·가스 생산을 통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유 및 마케팅 관련 권리와 자산을 중심으로 카리부해 연안 국가, 미국, 유럽 등의 원유·가스와 관련된 회사 지분

72) Hydrocarbon Law 2001, arts. 61, 63.

73) Hydrocarbon Law 2001, arts. 9, 12, 22-24, 66-68.

74) Hydrocarbon Law 2001, arts. 44, 48.

75) Hydrocarbon Law 2001a, arts. 44, 45.

76) Natalija Vojvodic and Sergio Casinelli, *supra* note 59.

77) *Id.*

78) Hydrocarbon Law 2001, art. 48.

79) Hydrocarbon Law 2001, art. 22.

도 보유할 수 있다.<sup>80)</sup>

PDVSA는 베네수엘라에 있는 유전만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 회사는 2008년 기준으로 원유·가스 업계에 있어 세계 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유 능력에 있어서 5위, 생산 능력에서 7위, 판매 분야에서는 8위를 차지하고 있다.<sup>81)</sup>

## 8. 국제 조약 및 협약

베네수엘라 정부와 다른 국가 및 국제기구 등과의 조약이나 협약 또한 베네수엘라에서의 원유·가스 탐사개발 사업에 국내법과 같은 효력으로 적용된다.<sup>82)</sup> 따라서 원유·가스 탐사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외국인 투자자는 베네수엘라 법제뿐만 아니라 베네수엘라가 가입한 조약이나 협약에 대하여도 파악하여야 한다. 베네수엘라는 이미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공화국,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아이티, 온두拉斯, 니カラ과, 파나마 등과 원유 판매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sup>83)</sup> 아울러 베네수엘라는 쿠바와 매일 53,000베럴의 원유를 공급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sup>84)</sup> 또한 베네수엘라는 외국중재결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뉴욕 협정, 양자간 투자 조약 등에 가입하고 있다.<sup>85)</sup>

## III. 전력 법제

### 1. 전력산업의 현황과 발전

베네수엘라는 2010년을 기준으로 약 25기가와트(gigawatts)의 전력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80) Id.

81) Carlos A. Molina, *supra* note 15, p.2.

82) Hydrocarbon Law 2001, art. 6.

83) Venezuela Offering Neighbors Oil Deal, L.A. TIMES, Oct. 19, 2000, available at <http://articles.latimes.com/2000/oct/19/business/fi-38725>, last visited May 18, 2014.

84) Cuba, Venezuela Sign Oil Deal, ASSOCIATED PRESS, Oct. 30, 2000, available at <http://www.latinamericanstudies.org/venezuela/oil-deal.html>, last visited May 18, 2014.

85) Inter-America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the 1979 Montevideo Inter-American Convention on General Rule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the 1979 Montevideo Inter-American Convention on Extraterritorial Validity of Foreign Judgments and Arbitral Awards; the 1975 Panama Inter-American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nd the 1958 New York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있으며, 1,050억 킬로와트하워(kilowatthours)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는데, 약 72%는 Caroni 강으로부터 생산되는 수력발전에 의지하고 있다.<sup>86)</sup>

베네수엘라의 전력 산업은 여러 단계를 거쳐 발전하였다. 1970년대 중반까지 베네수엘라의 전력산업은 국가와 민간에 의해 지배되고 있었다. 1974년에 전력 등과 같은 기반시설 관련 기업의 주식 80%에 대하여 국내 투자자가 매수할 수 있게 되었다.<sup>87)</sup> 이후 1980년대 들어 정부는 미시경제 조정 및 안정 정책을 실시하여 민간 참여의 확대와 시장 경쟁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sup>88)</sup>

그러나 1999년 2월 집권한 차베스는 전력서비스구조법 등을 시행하여 전력 부분에 대한 구조개편의 기본틀을 확립하였다.

## 2. 전력서비스구조법

베네수엘라 전력서비스구조법은 1999년에 제정되었고,<sup>89)</sup> 2001년에 개정되었다.<sup>90)</sup> 전력서비스구조법은 전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존의 법제를 전반적으로 개선하였다. 이 법에 근거하여 베네수엘라는 발전, 전력 전송 및 유통에 있어 공공 서비스적 성격을 인정하면서도 상업화를 시도하여, 자유경쟁의 원칙에 입각한 전력거래시장(Wholesale Power Market)과 통제된 요금시장(tariff market)을 운영하였다. 그 결과 전송 및 유통 부문은 통제되었으나, 발전과 마케팅 부문은 경쟁원리가 도입되었다.<sup>91)</sup> 아울러 이 법은 발전, 전송, 유통 및 마케팅 회사 사이의 법률, 회계 및 경영을 분리하여 어느 한 회사로 하여금 발전, 전송 또는 유통의 하나 이상을 수행할 수 없게 함으로써, 소비자에 대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품질이 우수하며 가격도 저렴한 전력을 공급하도록 유도하였다.<sup>92)</sup> 한편, 이 법에 의하여 에너지

86)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supra* note 1.

87) Lenin Balza, Raul Jimenez and Jorge Mercado, "Privatization, Institutional Reform, and Performance in the Latin American Electricity Sector",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2013. 12), p.21.

88) *Id.*

89) Decreto con Rango y Fuerza de Ley del Servicio Eléctrico, G.O., No.36,791, 21 de septiembre de 1999(Venez.)[1999 Electricity Service Organic Law]. 앞의 각주 34, 참조.

90) Ley de Reforma Parcial del Decreto con Fuerza de Ley del Servicio Eléctrico, G.O., No. 5,568 Extraordinario, 31 de diciembre de 2001. (Venez.)[2001 Electricity Service Organic Law]

91) Larry B. Pascal, *supra* note 22, p.568.

92) Electricity Service Organic Law, 2001, art. 6.

광물자원부는 발전, 전력의 전송, 유통 및 마케팅과 관련한 각종 요금을 통제하였다.<sup>93)</sup> 에너지광물자원부는 반기에 한번 인플레이션과 환율 및 월간 에너지 비용 등을 고려하여 요금을 조정할 수 있었으나, 2003년에 정부는 전력을 포함한 생필품에 대한 가격통제 정책을 확립하였다.<sup>94)</sup>

이후 발전, 전송, 유통 및 마케팅 활동을 최적화함으로써 베네수엘라에서 영업하는 회사들이 제공하는 전력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2007년 “전력분야구조조정”에 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었다.<sup>95)</sup> 이 대통령령에 따라 전력분야의 지주회사로서 국영전력회사 (Corporación Eléctrica Nacional, National Electrical Corporation)가 설립되었다.<sup>96)</sup> 이 국영 전력회사의 주식은 정부가 75%를 소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25%는 PDVSA가 소유하고 있는 바, 에너지광물자원부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sup>97)</sup> 이 회사는 전체 전력공급망을 총괄하고 있으며, 베네수엘라 전체 전력 공급의 3/4을 차지하고 있는 Electrification del Caroni(EDEDCA) 등을 포함한 주요 전력회사에 대하여 통제하고 있다.<sup>98)</sup> 전력 분야의 민간 회사들은 이와 같은 국유화 정책에 따라 자신들의 주식을 이 국영전력회사에 매각하여야 한다.<sup>99)</sup>

## VI. 시사점 및 결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베네수엘라의 원유·가스 등 에너지 자원은 국가의 소유이며, 국가는 이에 대한 탐사개발, 정유, 제품 생산 등에 대한 권리를 소유하고 있다. 아울러 관련 활동에 대하여 통제하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원유·가스 탐사개발 및 관련 시설 등의 사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들은 베네수엘라 정부로부터 원유·가스 탐사개발권 기타 관련 사업권을 취득하거나, 국제석유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양수하여 취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베네수엘라 정부는 공공정책 규정에 따라 원유·가스 탐사개발 권리에 대하여 공공수용을 실행할 수 있음은 물론 강

93) Electricity Service Organic Law, 2001, arts. 77-86.

94) Victor M. Tafur, *supra* note 19, p.305.

95) Decreto con rango, valor y fuerza de Ley Orgánica de Reorganización del Sector Eléctrico, G.O., No. 38,736, de 31 julio de 2007 (Venez.)[Decree on Reorganization of the Electrical Sector].

96)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supra* note 1.

97) Larry B. Pascal, *supra* note 22, p.570.

98)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supra* note 1.

99) Larry B. Pascal, *supra* note 22, p.570.

제적 준거법 및 관할권 조항을 계약에 편입시킬 수도 있다. 또한, 우리 기업들은 베네수엘라 정부의 세금이나 로열티 증가 요구 등의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이러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적 접근 방법을 모색하고, 유리한 계약설계에 유념하여야 한다. 즉, 우리 기업들은 베네수엘라 정부와의 계약에 있어 정부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안정화 조항, 재협상 및 변경 조항, 준거법 조항, 중재 및 주권면제포기 조항, 외환규제 조항 등의 설계에 유의하여야 하며, 원유·가스 탐사개발과 관련하여 최소작업의무나 광구반납 관련 조항에 대한 설계에도 유의하여야 한다.<sup>100)</sup> 아울러 베네수엘라 정부가 가입한 양자 및 다자간 조약은 물론 외국인투자보호 조약 등에 대하여도 면밀히 살펴보고, 계약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 참고문헌

### [국내]

- 오일석, “원유·가스 탐사개발권 계약에서의 계약설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12.  
-----, “원유·가스 탐사개발에서의 비밀유지계약에 대한 고찰”, 단국대학교 법학논총, 2013. 9.  
오정환, “원유·가스 탐사개발권의 취득에 관한 법적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2.  
임태균, “베네수엘라 4기 차베스 정부의 석유산업 정책 전망 및 시사점”, 지역경제정책커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2. 12.

### [국외]

#### 〈단행본 및 논문〉

- Cuervo, Luis E., “The Uncertain Fate of Venezuela’s black Pearl; The Petrostate and its Ambiguous Oil and Gas Legislation”, 32 Housto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2010).  
Eliuri, Elisabeth Eliuri and Victorino J. Tejera Pérez, “21st-Century Transformation of the Venezuelan Oil Industry”, 26 Journal of Energy and Natural Resources Law(2008).  
Lieuwen, Edwin, “The Politics of Energy in Venezuela”, in; Join D. Wirth, ed., Latin American Oil Companies and the Politics of Energy(University of Nebraska Press, 1985).

100) 이러한 자원보유국 정부 위험에 대응한 계약설계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오일석, 앞의 박사학위논문 참조.

- McNew, B. Seth, "Full Sovereignty Over Oil: A Discussion of Venezuelan Oil Policy and Possible Consequences of Recent Changes", 14 Law and Business Review of America(2008).
- Pascal, Larry B., "Developments in the Venezuelan Hydrocarbon Sector", 15 Law and Business Review of the America (2009).
- Schoen, Douglas and Michael Rowan, The Threat Closer to Home: Hugo Chavez and the War Against America, Free Press(2009).
- Tafur, Victor M., "Sustainable Energy Law in Latin America," Pace University School of Law, S.J.D. dissertation(2006).
- Witten, Emily A., "Arbitration of Venezuelan Oil Contracts: A Losing Strategy?", 4 Texas Journal of Oil, Gas and Energy Law(2009).

### 〈보고서〉

- Balza, Lenin, Raul Jimenez and Jorge Mercado, "Privatization, Institutional Reform, and Performance in the Latin American Electricity Sector",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2013. 12.
-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U.S. Department of Energy, Country Analysis Briefs, Venezuela, 2012, <http://www.eia.gov/countries/analysisbriefs/Venezuela/venezuela.pdf>.
- Molina, Carlos A., "Country Report: Venezuela and Petróleos de Venezuela(PDVSA)", <http://www.mccombs.utexas.edu/~media/Files/MSB/Centers/EMIC/Conferences/C2ES/Country-Report-Venezuela-PDVSA.pdf>.
- Ravell, Alberto F., "A brief overview of Venezuela's Oil Policies", LEXOLOGY, 2011. 12, <http://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01cf61f2-9591-4ac3-9ceb-59ac37090e13>.
- Vojvodic, Natalija and Sergio Casinelli, "Oil and Gas Regulation in Venezuela: Overview", <http://uk.practicallaw.com/1-529-6958?source=relatedcontent>.

### 〈뉴스기사〉

- 투뉴스(2013. 3. 8), 차베스 사후 베네수엘라 석유산업 <http://www.e2news.com/news/articlePrint.html?idxno=68921>.
- Cuba, Venezuela Sign Oil Deal, ASSOCIATED PRESS, Oct. 30, 2000, <http://www.latinamericanstudies.org/venezuela/oil-deal.htm.l>.
- Helen Popper, Chavez Spreads His Oil Wealth in Bolivia, REUTERS, May 27, 2006, <http://www.commondreams.org/headlines06/0527-04.htm>.
- James Suggett, Venezuelan Trade Declines with U.S., Increases with Brazil, Russia, China, Japan, VENEZUELANALYSIS.COM, Aug. 21, 2009, <http://www.venezuelanalysis.com/news/4738>.
- Putin Signs Energy Deals with Chavez on Venezuela Visit, BBC News, Apr. 3, 2010, <http://news.bbc.co.uk/2/hi/8601388.stm>.
- Warren Bull, Venezuela Signs Chinese Oil Deal, BBC NEWS, Sept. 25, 2008, <http://news.bbc.co.uk/2/hi/americas/7634871.stm>.
- Venezuela Offering Neighbors Oil Deal, L.A. TIMES, Oct. 19, 2000, <http://articles.latimes.com/2000/oct/19/business/fi-38725>.